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
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3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 분야	임용 등급	임용 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 부서	담당직무 내용
정책 지원관	임기제 지방행정서기	1명	채용일 ~ 1년 (주40시간)	성북구의회	◎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-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심의 중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·조사·분석지원 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-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-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◎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지원 ◎ 기타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에 따른 일반사무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

2. 응시 자격 요건

가. 법령 근거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5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나.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응시연령 : 만18세 이상 (2008.12.31.이전 출생자)
- 지역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근무예정일 기준으로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다.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분야	자 격 요 건
정책지원관 (임기제8급)	<p>◎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◆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국회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(출연·출자기관 포함), 공공기관, 연구소, 사회단체, 기업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분야 등과 관련하여 일반행정, 연구·조사·분석, 입법지원, 의원보좌의 실무 경력 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 *공공기관 :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</p>

- 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)
- ※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(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※ 전임근무(주40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> 주:20시간),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- ※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으로 함.
- ※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, 이때 검증을 위해 '폐업사실확인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' 중 1종과 '소득금액증명서'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- 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
3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 -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

구 분	근무시간	보수수준		비고
		상한액	하한액	
정책지원관 (임기제8급)	주 40시간(09:00~18:00, 1일 8시간, 주5일 근무)	62,096천원	44,296천원	
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1. 3.(화)~ 2026. 11. 5.(목) <3일간 09:00~18:00, 근무시간에 한함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(우편접수는 등기에 한하며, 인터넷 등 접수 불가)
 - ※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(반드시 확인 바람)
 - ※ 쿼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.
-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-60 성북구의회 (의회1층)
 - 주 소: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-60 성북구의회(의회1층) 1층 의정팀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등기우편의 경우 **우체국 통상환증서** 동봉만 유효하며 위임란은 공란으로 비워둠)
 - ※ 대리접수(가능)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겉면에 '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지원 서류' 명기

나.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 합격자 발표
	일 시	장 소	
2026. 11. 11.(수) 예정	2026. 11. 13.(금) (예정)	의회사무국 회의실	합격자 개별 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및 면접시험 일시 등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

다. 시험방법

-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위원이 별도 설정·시행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가
 - ▶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(15점)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40점)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(15점)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5점)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15점) 등
-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정책지원관(8급) 5,000원

·판매장소 :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

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원서접수처(성북구의회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○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4호 서식) 1부

-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6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「<http://www.nhic.or.kr>」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7호) 1부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-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어학검정서 등)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-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6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,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. (※ 방문수령만 가능,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,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)

※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면접 당일 코로나 확진 등 기타 전염병으로 미참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북구,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의회 의정팀 담당 (☎ 2241-585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*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(별도 첨부).

직무기술서

임용기관	임용예정직급	채용인원	임기
성북구의회	일반임기제(지방행정8급)	1명	1년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심의 중 의회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지원 ②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④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⑤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-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지원 -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- 기타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에 따른 일반사무
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- 회기운영, 의사진행, 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- 조례안, 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작성 능력 -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분석·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 능력
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- 조례안, 건의·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
------	---

응시요건	<p>◎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◆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 <p>: 국가, 국회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(출연·출자기관 포함), 공공기관, 연구소, 사회단체, 기업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분야 등과 관련하여 일반행정, 연구·조사·분석, 입법지원, 의원보좌의 실무 경력 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p> <p>*공공기관 :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</p>
------	--